

인권센터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공회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교 직제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성공회대학교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② "성희롱"이라 함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모욕감,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성차별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및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3. 성희롱의 가해자 및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③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2차 가해행위"라 함은 당해 사건 이후 사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⑤ "고충민원"이란 대학교의 위법·부당한 적극적·소극적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본교 구성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구성원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또는 본교 구성원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 ⑥ "직장 내 괴롭힘"이란 교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교직원 복무규정 제23조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 ⑦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⑧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 ⑨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 ⑩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또는 고충민원의 발생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⑪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 ⑫ "참고인"이란 신고인 및 당사자 이외에 인권침해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참고가 되는 의견을 진술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⑬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등 당해 사건의 관련자를 말한다.
- ⑭ "관계부서"란 사건의 신고 및 고충민원 접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⑮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 학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성공회대학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내·외를 불문하고 본교 구성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한 인권침해

해 등의 사건에 적용한다.

제2장 인권센터의 조직

제1절 조직 및 업무

제4조(조직과 구성) ①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의 조직을 둔다

1. 인권센터장 1명
2. 전문상담원 또는 연구원 약간명
3. 행정직원 약간명

- ② 센터에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되, 인권문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전문상담원은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조사, 교육 등에 관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 ④ 행정직원은 센터의 업무와 각종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기타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 ⑤ 센터는 업무보조로 근로학생을 둘 수 있다.

제5조(업무) ① 센터는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관련 상담 업무를 위해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상담, 신고 및 고충민원접수, 조사, 구제
2.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피해자의 보호
3.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활동
4. 그 밖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관련부서와 협조가 필요하다 판단한 경우 관계부서 장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전문상담원의 인권침해 등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상담·조사 및 고충처리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실시) ① 센터장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매년 초에 제1항의 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성비(남·여)는 일방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무처장, 총무처장, 연구교류처장, 교목실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교수, 직원 및 총학생회 추천을 받은 학생 1인을 포함하여 학내외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 활동 보조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학내 구성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이 규정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4.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센터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기본운영계획 및 운영방안
 2. 센터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정
 3. 센터의 예산과 결산
 -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시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제10조(자문위원회)** ①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기타 자문위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절 인권침해조사·심의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침해조사·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등에 관한 사건 (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조사 및 심의
2. 사건의 조정 또는 합의 권고 및 구제조치 권고
3. 사건의 수사기관에의 고발, 징계 건의 요구 등
4. 규정·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등의 요구
5. 기타 센터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및 임기) ① 심의위원회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심의가 필요한 때에 센터장이 구성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의 상시위원으로 구성하며 특별위원 위촉 시 9인까지 구성이 가능하다. 단, 위원 성비(남·여)는 일방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상시위원은 본 대학교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특별위원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교원·직원·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 ⑤ 조사·심의위원회 회의 시 외부위원을 제외한 내부 특별위원(교원·직원·학생)은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임시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임시위원장은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⑦ 위원 임기의 경우, 상시위원은 본인의 임기까지 보장되며 특별위원은 해당 사건이 종결되는 때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 ⑧ 심의위원회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센터의 구성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사건이 발생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사건의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 또는 녹화로 대신할 수 있다.
- ④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조사·심의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⑤ 위원이 회의에서 행한 발언, 표결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대학교는 이를 이유로 당해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제척) 위원장 및 위원 중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사건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할 수 있다.

1. 당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2.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3. 사건 당사자(신고인, 피신고인, 피해자 등)와 같은 학과, 부서 소속인 경우

제15조(기피) ① 사건 당사자는 위원장 및 위원 중 제14조의 사유가 있거나 사건처리에 있어서 불공정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위원장에게 당해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은 위원회에 한다.

- ② 기피신청은 개별 위원별로 하되,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7일 이내 당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기피신청을 당한 위원장 또는 위원은 당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때에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④ 기피신청이 있는 때 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사·심의를 중단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기피가 이유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 ⑦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6조(회피) ① 위원은 본인이 제14조의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말하고 회피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의 회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피를 수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교체) ① 위원장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사건에 관한 조사·심의과정에서 위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 해당 위원에게 해촉을 통보 후 새로운 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3장 인권침해와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심의와 구제 등

제1절 사건의 신고

제18조(신고 및 조사의 대상)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그 대리인 또는 인권침해 등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③ 센터 이외의 본 대학교의 다른 기관에서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센터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사건을 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에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 센터는 이전에 조사·심의하여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심의하지 아니한다.

제19조(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사건의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각하한다.

1. 신고인이 제18조 제1항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2.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4. 센터에서 이전에 조사·심의하여 종결된 사항인 경우

5.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다만,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특정되어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다.

6. 신고 사실이 센터에서 조사·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신고의 기각) ① 센터장은 사건조사 결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고자가 위증하거나 조사 과정 중 신고자에 의한 인권침해 가해가 발생하는 경우

3. 조사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통지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신고의 철회) ① 신고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신고를 철회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 및 피해자가 센터의 연락 및 조치에 대하여 3회 이상 응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신고의 철회로 간주한다. 철회 전 최종 연락 및 조치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임시조치)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원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즉시 중지

2. 피해자와 분리조치 및 접근·연락금지 명령 등 추가 인권침해 발생 예방 조치

3. 당사자의 관련 직무로부터 배제 조치

4. 피신고인이 복수인 경우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행위 등의 공모금지

5.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동아리, SNS 등의 적법한 점유 및 활동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6. 그 밖에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사건의 조사

제23조(조사의 개시) ① 센터장은 사건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제19조 또는 제21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즉시 심의위원회를 구성,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여 이를 방지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사건의 조사에 있어서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공개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사건 조사 전에 당사자에게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사건은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건의 조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직권조사는 조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사건의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센터장은 사건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의 적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원으로 하여금 1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조사의 방법)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 관계부서는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법기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국가기관의 조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로 갈음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5. 기타 사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방법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건의 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적인 진술서 제출 및 출석이 요구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경우는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석시일 이전 센터에 통보하여 변경 요청 할 수 있으며, 이때 출석일 변경의 요청은 2회로 한한다.

④ 센터장은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여 이를 방지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센터장은 직권조사 후에 당사자 간의 중재를 하거나,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위원회에 회부를 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조사절차에 출석 또는 참여를 거부할 수 있고, 출석한 때에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있어서 변호사 등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이 출석한 때에는 본인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가 심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이 사실을 이유로 사건의 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조사중지) ① 위원장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2. 사건의 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3. 기타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조사를 중지한 사건에 대하여 중지일로부터 2개월마다 신고인, 피해자, 중요 참고인의 소재 및 조사 가능의 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며, 조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조사중지 후 6개월이 경과 한 때에는 특별히 조사를 계속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후 사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의하여 사건이 종결 처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센터장을 통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통지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조사의 중단) 위원장은 조사 중인 사건이 수사기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접수(신고)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한 구체절차가 진행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조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제28조(조사의 종결) 심의위원회는 조사가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심의하여 사건의 내용 및 그 처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절 사건의 처리

제29조(중재) ① 신고인이 사건조사를 통한 해결이 아닌 중재를 요청할 경우 센터장은 중재를 할 수 있다.

② 피신고인이 중재안을 제안할 경우 센터장은 1회에 한하여 신고인 및 대리인에게 중재안을 전달할 수 있다.

③ 중재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인은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④ 센터장은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중재를 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조정이 결렬된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진행하게 하여야 한다. 직권조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⑥ 중재절차는 심의위원회에서 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후에는 진행할 수 없다.

제30조(구제조치, 징계 및 고발 등의 권고) ① 위원회는 센터의 조사결과를 심의한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나 또는 둘 이상 권고할 수 있다.

1. 관련 규정·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2. 피신고인 등에 대한 징계

3. 인권침해 등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분이 필요한 경우 피신고인 등에 대한 고발 조치

4. 피해자의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전 항의 권고와 별도로 피신고인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나 또는 둘 이상 권고 할 수 있다.

1. 공개 또는 비공개 사과 권고

2. 인권 및 관련 의무교육의 이수 명령

3.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4. 행위자에 대한 교내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명령

5. 행위자에 대한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명령

6. 그 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7. 가해자가 외부인일 경우 가해자의 소속기관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징계를 요구

8. 피해자의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당부서에 권고

9. 피해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위증하는 자에 대한 제1항 내지 제2항의 조치를 적용

10. 기타 사건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권고

③ 가해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중조치를 하거나 또는 해당 징계 기관에 가중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재범인 경우

2.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3.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보복행위를 한 경우

4.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특정한 진술의 요구 또는 협박·회유 등을 통해 사건을 왜곡시키려는 행위를 한 경우

5.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신원노출 등 명예훼손 행위를 하거나 이들에게 부당한 침해를 가한 경우

④ 심의위원회는 피해자의 신고 및 조사를 방해한 사람과 심의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폭행·협박, 허위사실의 진술, 증거조작 등 조사를 방해하거나 또는 조사 관련 협조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

한 사람에게도 제1항 내지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는 가해자 또는 피신고자가 외부인일 경우에는 이들의 소속기관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행위중지, 경고 또는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통보 및 처분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구제조치 이행 및 후속 조치) ① 센터장은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인권침해 등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 ② 센터장은 조사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발방지나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단, 제1항의 경우 센터장은 그 사유를 검토 후 필요시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제32조(징계의 요청) ① 센터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징계 사유와 징계수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관련 부서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에게 보고 후 징계 사유와 징계수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관련 부서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사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임시조치 관련 조항 또는 구제조치조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피해자에게 2차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5.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6. 누구라도 센터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7.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 폭행 또는 협박이 발생한 경우
8. 제29조에 따른 중재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 ③ 센터장은 총장에게 피신고인에 관한 징계를 요청한 경우, 징계처리의 결정 및 징계가 집행 완료되기 전까지 피신고인의 자퇴나 휴학, 사직 또는 휴직 등을 승인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접수된 사건의 조사결과 피신고인의 명백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요청 이전에도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제3자의 조사 활동 방해 등에 관한 처분) 센터장은 사건당사자가 아닌 자(이하 “제3자”라 한다)로서 2차 가해행위를 하거나 센터의 조사활동 및 센터가 취한 조치의 이행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0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이의신청) ① 당사자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2조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당사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이의신청은 당사자에 한하여 1회 신청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는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건을 다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⑤ 센터장은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등, 요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초과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이를 기각할 수 있다.
- ⑥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의결 또는 센터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4장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및 기록 등

제35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외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 ③ 자문위원을 포함한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④ 자문위원을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⑤ 당사자 및 관련인은 해당 사건의 조사 및 처리의 결정 이전까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6조(기록의 보존과 열람) ① 센터장은 사건의 처리에 관한 내용과 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기록의 보관은 사건종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기한이 경과한 자료는 파기하여야 한다.

- ②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기록은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거나 누구도 열람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센터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하거나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 혹은 열람이 허용된 경우에도 대상자료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한한다.

제37조(2차 피해의 방지) ① 센터와 심의 및 조사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 시 피해자, 신고인 및 참고인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② 2차 피해는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 1.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조사행위
 - 2. 사건처리과정에서 당해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신분을 노출하는 행위
 - 3.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접촉하거나 화해를 종용, 회유하는 행위
 - 4.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5.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③ 센터장은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본 대학교의 구성원일 때에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도 제32조의 징계 요청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비용지원) 센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건의 조사 및 처리절차에서 증거자료 확보와 긴급한 피해구제 또는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불이익의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강, 학점, 졸업, 취업, 승진,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기타 학습권이나 노동권 및 신분이나 처우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40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서와 구성원은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1조(회계)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42조(운영세칙) 센터의 세부적인 운영사항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인권침해 사안 등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